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2. .
行政財務委員會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2일 구청
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사회) 제1
차 위원회(1995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자치구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규
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자치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의 정원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대현)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와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청·직속기관(보건소)·동사무소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므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의안 번호	301
----------	-----

제출년월일 : '9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치구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규정

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자치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의 정원을 규정함.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 대통령령 제14480(94. 12. 3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시정 01250-11 (95. 1. 9)호
→직제 관련 법규정비 철저 지시

4.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구 본 청 : 974명
- 2. 직속기관 : 74명
- 3. 동 : 472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